

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20일
신 청 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법 인	명칭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 (한글)	(한자)	
	소재지		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 설립을 신청하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.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.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(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합니다) 각 2부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: 토지(임야)대장 및 토지(건물)등기사항증명서	

처 리 절 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결재	➔	통보
신청인			처리기간: 국토교통부(부동산평가과)					